

Minor
장애인
여성장애인

Md.e.6

여성 장애인

1.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9
2. 제1회 국제장애인여성리더쉽포럼 보고대회자료집; 국제장애인여성리더쉽포럼참가단, 1997
3.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 해결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5
4.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신혜수
5. 여성 장애우 전국 실태 조사 발표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6. 성명서; 여성 장애인 권리

여성 99-01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 일시 : 1999년 5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가톨릭대학 사회복지대학원 강당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TEL:(02)521-5364 FAX:(02)584-7701
천리안, 나우누리 ID : COWALK / 홈페이지 : <http://www.cowalk.or.kr>

주최/주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후원 : 가톨릭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조사연구기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진

책임연구원 : 오혜경(가톨릭대학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미옥(한국성서대학 겸임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연구위원)

연구원 :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지석연(연세대학 재활학과 석사과정)

김정애(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진행 순서

사 회 김정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인사말 김웅일(가톨릭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발 제

김미옥(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기획연구위원, 한국성서대학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오해경(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기획연구위원, 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강철희(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연홍(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

노미혜(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이예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종합토의

목 차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저해하는 차별실태와 문제점	1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25

〈발제1〉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저해하는 차별실태와 문제점

김 미 옥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부장제의 사회구조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참여는 많은 부분 제한된 채 살아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여성이 장애를 지니고 있을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우리나라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 문제는 그저 막연히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차별 구조와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이 있었을 뿐, 이들의 복합적인 욕구 파악과 정확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는 크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인권선언에 여성 장애인 조항이 삽입되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여성 장애인 복지 조항이 명시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성 장애인이 당면한 차별 구조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정책 제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이 당면한 차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97 전국실태조사와 '98 차별사례 연구를 2차 자료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으며, 그 진행 과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선행 연구를 기초로 문헌 연구를 실시한다.

2단계. 18세 이상, 719명의 재가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97 여성 장애인 전국 실태 조사 결과(양적 조사)를 기초로 여성 장애인들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연구분석틀에 맞추어 분석한다.

3단계. 양적조사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여성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과 차별 실태를 명확히

하고자, '98년 12명의 여성 장애인 심층 면접한 차별 사례 연구(질적 조사)를 위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98 차별 사례 연구는 생애사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여성 장애인 삶의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 실태를 심층 면접한 질적 연구로서,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4단계, '97 실태 조사와 '98 차별 사례 연구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여성 장애인 당면한 차별 실태와 문제를 규명하여,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 생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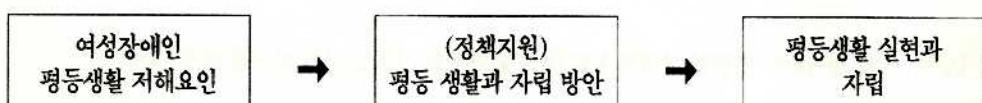
1. 차별 구조와 연구 분석틀

여성 장애인 차별 구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여성 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sexism)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disabolism)이 맞물린 이중적인 차별구조 안에 얹매여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 종교적, 사회적 배경 등이 이러한 이중적 차별을 가중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 장애인 당면한 현실은 매우 다중적 차별 구조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 당면하고 있는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삶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체계적, 통합적,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을 위한 전체 연구 분석 틀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보고자 한 것으로, 여성 장애인 당면한 차별 실태와 문제점인 평등 생활 저해 요인을 밝혀 내어 이들 각각의 저해 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 평등 생활과 자립 방안을 구축하면,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 실현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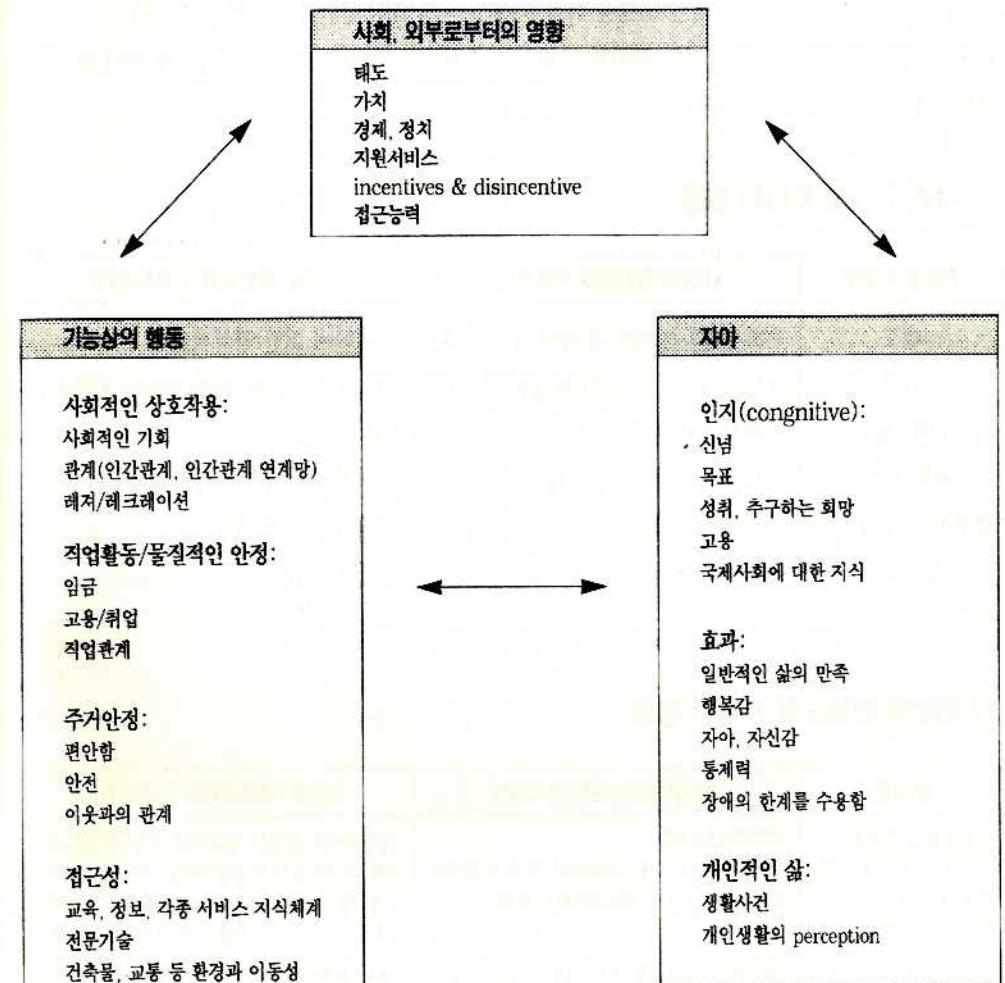
<그림 1>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 모형



위와 같은 전체적인 연구분석틀 하에서, 구체적으로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한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즉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3차원 -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기능상의 행동, 자아 - 에서 저해 요인과 자립 방안이 규명될 때, 결과적으로 통합적인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2>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을 위한 분석틀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제시된 연구분석틀을 기초로, 여성 장애인이 당면한 차별 구조와 문제점을 밝혀보자 한다. 이는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여성 장애인 평등한 삶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3차원 -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기능상의 행동, 자아 - 에서 일어나는 차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여성 장애인 평등 생활과 자립을 위한 분석틀 및

평등 생활 저해 요인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삶과 자립 생활을 위한 저해 요인과 자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고에서는 이 중 결림돌 부분을 전체적인 분석틀로 설정하여, 여성 장애인이 당면한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1) 사회 외부로 부터의 영향

기능상의 행동	결림돌(평등생활 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태도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기준
경제, 정치	-정책적 배려 부족	정립
지원서비스	-비효율적인 서비스전달체계	-정책적 지원서비스 마련
공정적/부정적 강화	-접근권미비: 사회, 각종정보, 통신,	-효율적 서비스 전달
접근능력	정치, 교육, 고용	-접근권 보장

2) 기능과 행동으로 부터의 영향

분석틀	결림돌(평등생활 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사회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기회/관계(인간 관계, 관계망) 脆弱, 레크레이션	-사회적 상호작용 불평등한 교육, 고용, 양육기회, 공식, 비공식적 원체계 부족, 여가, 레크리에이션 부족	-가족내에서 평등한 양육기회 제공/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능력배양/ 평등한 고용기회 제공/ 평등한 결혼기회 제공/ 여가생활,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비)공식지원체계 확립
건강보건	-건강보건, 예방교육 부족,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관 부족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의료관리체계화/ 의료기관 확충
직업활동/물질적 안정 임금/고용/취업 직업관계	-불평등한 임금, 취업기회 부족, 기타 직업활동 저해 요인	-평등한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 소득안정
주거안정/편안함 안전/이웃과의 관계	불안정한 환경, 주거문제, 지역사회와의 관계 부족	-안정된 환경 조성 및 주거문제 해결/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접근성: 물리, 환경 건축물, 교통 등 환경과 이동성	-장애인 전문시설에의 접근성부재 -교통, 환경, 건축물의 장벽	-접근성 강화

3) 자아

분석틀	결림돌(평등생활 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인지:	신념, 목표, 성취, 추구하는 희망, 고용,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인지: 자립의 의지 부족 삶의 목표의식 부족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부재 성폭력 매매춘
효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감 자아, 자신감 통제력 장애의 한계를 수용	효과: 부적절한 장애 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자신감 부족 효과: 장애인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개인적인 삶: 생활사건 개인생활의 Perception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부족 개인적인 삶의 기회 부족 부족한 개인 삶의 확보

3.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자립에 대한 저해요인 분석

- 차별실태와 문제점 중심으로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 규모는 전체 장애인의 45.7%인 47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약 1.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5년 이후 장애인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증가, 인구 고령화, 그리고 60-70년대 안보와 경제 개발을 주로 담당했던 남성에게 많았던 장애(예. 전상 장애)의 상대적인 감소 등에 기인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평등 생활과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분석 틀을 중심으로 각각의 영역에서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에서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란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위해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성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즉 가치, 태도, 물리적 환경, 전달 체계 등 거시적 측면의 접근이다. 이는 사회 외부로부터의 평등성 보장에 대한 것으로 여성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즉 자립 생활에 매우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 할 것이다.

(1)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기조안에서 장애인은 비생산적이라는 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개성이나 적성보다는 전체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획일성이 신체적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차별 의식을 형성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시설수용위주의 분리정책으로 장애인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적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편견의 대상이고 왜곡된 인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라는 차별적 요인이외에 우리 사회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유교전통과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하여, 남성 장애인에 비하여 다중적인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원인도 남성장애인의 경우는 산업재해, 전쟁 등 외적환경요인으로 돌리는 반면, 여성 장애인은 개인내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 장애가 사회문제나 책임이라기 보다는 여성자신의 문제와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애가 하나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불행과 복지만 판여된 것으로 보게 하여, 여성장애인 자신에게는 죄의식을 갖게 하며,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게는 부정적인 반응과 회피행동으로 연계될 소지가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97 실태조사와 '98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들 중 42.6%가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시각(54.5%), 지체(42.3%), 청각(33.3%) 순으로 사회의 편견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가족을 포함한 이웃보다는 우리 사회의 비장애인들이 여성장애인들에 비해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98년 사례연구결과 역시 '97년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준다. 조사대상이 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자립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소녀장애인은 학교선생님이나 학교또래의 아이들이 '장애인을 벌레 보듯이 하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친구관계에 대한 두려움, 학교선생님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져서, 결국 여성장애인의 자아를 위축하게 하며 자아정체감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적응 및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회적인 혹은 대상의 선별성에 기초하지 않고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별된 사람이 아니며,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

우리사회에는 남성, 여성의 능력 및 역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가진 사회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즉 남성은 어떠해야 하고, 여성의 행동과 태도의 본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혹은 규범이라는 이름 하에 오랜기간 당연시되어 온 편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남성에 대한 이미지와 현모양처에 대한 여성의 이미지는 사회의 고정된 성역할 분화로 강하게 굳어져 있다. 이러한 성역할 분화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차 힘겨워 보인다.

성역할 분화에 대한 유명한 조사인 브로버만(Inge K. Broverman)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전형적인 여성의 특징과 남성의 특징을 열거하도록 함으로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남성의 특징은 독립적, 지배적, 경쟁적, 논리적, 지도적인, 모험적인 등의 특징을 여성의 경우는 상냥함, 재치있음, 외모에 대한 관심, 조용함, 부드러움, 예술과 문학을 즐김, 울기 잘함, 의존적임, 거친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독립적/의존적, 이성적/감정적, 능동적/수동적 등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남성의 특징이 여성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은연 중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이어 여성학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자와 여자의 전형적인 개인적 속성들에 관한 신념들로서, 문화적 고정관념과 개인적 고정관념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문화적 고정관념이란 대중매체, 예술 및 문학 등에서 발견되는 사회적인 수준의 이미지들이며, 개인적 고정관념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신념들이다. 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일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S. Bem(1970)은 마치 물고기가 주위가 젖어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의식할 수조차 없다(nonconscious ideology)고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되는 일반화된 차별구조와 왜곡된 가치기준들에 대한 것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왜곡된 가치 기준에 장애라는 편견까지 덧입혀져 이중적 차별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 미, 성에 대한 가치기준으로 볼 때,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 선택될 수 없는 무력한 객체로서의 역할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구조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물고기와 물에 대한 Bem의 비유처럼, 차별받았는지 혹은 평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마저 갖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많다.

'97년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여성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고객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가 13.1%나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왜곡된 가치 반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직접적인 조사이외에도 매스컴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어둡고 불행하고 슬프게 그려지는 이미지 등은 문화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여성장애인 스스로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 안에서 사회의 여성성과 미에 대한 가치기준을 내재화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아부인, 자기비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이미지는 여성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98 사례연구에서도 이러한 차별양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신지체여성의 경우 한동네에 사는 비장애인 남성들이 반강제로 술을 권하거나, '부부관계는 어떻느냐', '잠자리는 좋느냐'는 무례한 질문을 하는 등 여성장애인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은 쉬운 상대라는 혹은 가벼이 대해도 된다는 비장애인 남성의 무의식적인 표출로서, 왜곡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여성성과 미에 대해서는 가치절하되고 있으며,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성에 있어서도 자기결정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로서의 존중 등이 결여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성에 대한 인권존중마저 침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와 태도들은 이 후 여성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존중과 평등성 보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3) 정책적 배려 및 지원서비스 부족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노인·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들이 있으나, 이는 주로 장애가 갖는 특수성에 기초한 제도적 배려들이어서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향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시 가중처벌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여성장애인조항이 삽입되는 정도였다. 또한 여성장애인문제는 여성계나 장애계에 모두에서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무부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육아와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문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서비스,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종개발과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을 뿐더러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정책도 거의 없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삶 보장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서비스와 한명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고용과 교육에서의 정책적 지원서비스, 경제적 빈곤자나 여성장애인 모자가정에 대한 생계지원서비스, 생업자금 융자 서비스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서비스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97년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정부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정책의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8.5%에 불과한 반면, 정책수립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63.6%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정책이나 사회프로그램에 여성장애인의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 과반수 이상의 높은 이용욕구를 보였으나,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정책이나 사회프로그램들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장애특성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유지하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한 가사, 육아지원, 임신 출산 서비스 등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정책이나 사회프로그램에서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98년 사례조사의 경우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한번도 이용해 보지 못하였고 외출지원, 가사노동, 노후생계보장 등에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생계보장의 어려움, 자녀양육과 임신, 출산 등에서의 어려움은 조사대상이 된 사례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정책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공식, 비공식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은 곧 자립생활의 부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문제의 특수성 상 여성장애인 자녀, 가족 등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이 자립하게 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기초한 적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제 2의 장애를 갖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형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4)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요행정부처에서 여성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일선서비스담당기관에서 조차 여성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98년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업무가 유지되면서 인력이나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욕구조사 등의 선행연구 없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큰 한계를 갖게 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서에서 여성장애인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 및 일관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개발된 서비스나 제도가 효율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되, 이 중 1개소를 특화하여 여성장애인 전용 복지관(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을 만들고 이곳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는 체계가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일선장애인복지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여성장애인 모두에게 중재자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기관 설립은 여성장애인에게는 보다 질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중복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절약한다는 비용효과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97 실태조사의 경우는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98 사례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은 서비스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서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수첩발급의 경우 여러번의 방문과 재조정 과정을 겪는 행정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가사노동시의 가정도우미 제도의 활용이나 외출지원서비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활용 역시 많은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없이 지원됨으로서 오히려 자원봉사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정보부족으로 이용가능한 장애인복지시책의 경우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 접근권 미비

: 사회, 각종 정보, 통신, 정치, 교육, 고용 등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문제는 비단 여성 장애인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여성장애인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있어 접근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여성 장애인이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각종 정보나 사회, 통신 등에의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

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주로 교통이나 편의시설에의 접근권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각종 정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의 접근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0년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컴퓨터와 정보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이들 정보에의 접근성 취약이야말로 다양한 사회적 장애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 장애인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각종 정보에의 개방과 이들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보완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여성장애인을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게 함으로서 발생하는 제2, 제3의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삶과 자립 생활에 의미 있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능과 행동으로부터의 영향'에서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기능상의 행동이란 여성 장애인이 기능적으로 사회 내에서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 행동 상의 평등성 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상의 행동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직업활동과 물질적 안정, 주거 안정, 접근성 등의 하위개념을 가지고 있다.

(1)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

사회적 상호작용의 평등한 기회 제공은 인간의 평등한 삶 및 자립 생활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의 경우는 공식, 비공식 지원 체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육, 고용, 가정내 양육 기회, 여가, 레크레이션 부족 등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교육과 고용에서 여성 장애인은 현저한 참여 기회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여건에의 개방성에 있어서도 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차별의 양태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차별 구조를 보이는 교육, 가정내 양육 기회, 결혼에서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교육에서의 차별

'96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볼 때, 여성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이하가 79%, 무학도 32.5%나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 여성과 남성은 물론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현저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여성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므로, 대부분의 여성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

안으로 던져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7년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초등 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27.5%, 중학교 이하가 21.1%, 고등학교 이하가 41.3%, 대학교 이하가 9.5%로 나타났다. 교육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의 차별 정도는 37.8%가 차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충분히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7.1%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23.4%가 충분히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34.1%,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27.6%, 일반 학생들과의 갈등(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1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여성장애인들은 많은 경우 불평등한 교육 기회와 구조 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8 사례 연구 결과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로 제시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가 자신의 장애로 인해 갖게 되는 병원비나 보조 도구 등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럽고, 어려서부터 '돈이 많이 드는' 자신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이 정도만으로도 감지덕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다른 형제 자매에 비해 교육을 받지 못해도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여자는 교육을 덜 받아도 된다는 사회적 관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같은 장애인이라도 여성 장애인인 경우 교육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 사례의 경우,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부모가 주위에 대한 체면 때문에 특수교육 기관에 보내지 않고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 사례는 특수교육 기관에 갔지만 자신이 교육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중증 장애 중심의 교육이어서 다시 일반 학교로 갔으나, 막상 일반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장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겪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장애 아동들이 당면한 현실은 장애 아동 교육의 허와 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특히 체육 시간의 경우는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점수를 얻지 못하거나 겨우 낙제를 면하는 점수를 받기 일쑤이고, 수업 이외 소풍이나 여타의 활동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비장애인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학력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가정이 부유하거나 가족의 학생이 아주 카야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제시된 몇 가지 이유들은 사실 조사 대상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나라의 여성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정내 양육 기회에서의 차별

여성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의 제한성은 비단 여성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 체계인 가족 내에서 조차 여성 장애인은 불평등한 상호작용에 직면해 있다. 여성 장애인이 가족 내에서 겪는 차별과 문제점은 주로 불평등한 양육 기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연구 결과를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97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 내 의사 결정 과정, 가정 대소사 참여에서의 차별, 가족의 대화에서의 차별 정도에 대해 20% 이하의 사람들만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는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내에서의 차별 중 가족 나들이에서의 차별만이 58.4%로서 여성 장애인들이 외출 시 소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성 장애인의 가정내 차별 구조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주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중심의 표본추출 제한성과, 여성 장애인 스스로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스스로 차별 받고 있다는 의식화 역시 없는 채로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순환 과정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97년 실태 조사 결과와 달리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98년 사례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많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8년 사례 연구 결과 이들 여성 장애인들은 가족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되거나 일방적으로 회풀이 대상이 되었으며, 의사 소통 과정에서 같은 의견일지라도 다른 비장애인들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태도 등을 보여 가족 내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소외를 느끼도록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대소사의 참석과 같은 가족 행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장애인들이 '너만 이렇지 않으면, 혹은 너만 아니면, 나네 집은 걱정이 없는데' 등 한두마디 던지는 이야기들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참석을 하지 않게 되거나, 의도적으로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가족 외출이나 여행 시에도 마찬가지로 차별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 자녀와 함께 하는 외출에 대한 사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해 버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들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힘으로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당연히 '집에만 있는 아이' 혹은 '집보는 아이'로만 취급되어 사회와 대인 상호작용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냥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 내에서 또 다른 차별 형태로 소외, 무시가 아닌 과잉보호를 통해 장애 자녀의 독립적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무조건 '오냐, 오냐' 하는 식의 가족들의 태도에 정작 장애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거나 다르게 취급된다는 차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 기회 및 생활에서의 차별

미혼 여성 장애인의 결혼 기회에서의 불평등과 기혼의 경우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여성에 대한 여성미, 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 문제와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의 제한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한 영역이다.

97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장애인의 60.4%가 처음부터 반대 없이 원만하게 결혼 했다고 응답한 반면, 35.6% 정도는 양가 혹은 어느 한 쪽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 기혼 여성 장애인 가운데 41.2%가 남편이 비장애인이었는데, 이런 경우 더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친정보다는 시댁에서 더 반대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반대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우려, 남편이 비장애인이라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남자가 배신할까봐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98년 사례 연구 결과 역시, 97년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비장애인과 결혼한 경우 시댁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가사나 남편보궐 등이었고, 반대로 친정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97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 생활 도중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결혼 생활 만족도가 남편과의 관계나 자녀 양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가 갈등적인 경우에는 결혼 생활 전반에 회의를 갖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에 대한 보다 큰 기대나 밀착된 관계 유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기혼 여성 장애인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한 경우도 있었지만, 비장애인 남편의 구타, 여성 장애인 아내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인한 불화로 인해 결국 이혼으로 이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 후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양육자로서 여성 장애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그 어떤 부담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정신 지체 여성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분유 타는 법을 모르거나, 임신인줄도 모르고 마이신을 먹는 등의 경우가 있어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한편, 불평등한 부부 관계는 장애인들끼리의 결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같은 시각 장애인 부부의 경우, 시각 장애 여성에 대한 남편의 외출 금지 조치로 인해 집에만 있는 것이 패턴화되어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가능하면 외부와 상호작용 없이 가정 내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 변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성 장애인의 결혼 기회 및 생활의 평등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구, 일선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비스 등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건강 보건에서의 차별

: 예방 교육 부족,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의료 기관 부족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라는 여성 고유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여성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과 시설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이 임신하였을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 장애인들은 출산과 건강에 대한 심한 두려움에 쌌이게 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건강과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들이 존재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우리 나라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여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건강 위험 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생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함으로서 또 다른 장애를 발생하기도 한다.

97년 실태 조사의 경우는 건강 보건에서의 차별 부분이 제외되어 있으나, 98년 사례 연구의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중 대다수의 여성은 임신시 장애아 출산 염려와 자신의 건강에 관하여 심각한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여성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잘 인지하는 전문 의료 기관의 부재로 건강 보건에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음이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임신 이외의 일반 의료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의 경우도 전문 세팅의 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임신이나 건강 유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 교육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의 건강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서비스들이 필요하며 일선 기관과 전문가들에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습득과 지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직업에서의 차별

: 불평등한 임금, 취업 기회 부족, 기타 직업 활동 저해 요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에서의 평등성 보장은 이들의 평등 생활과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 전문 고용 기관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에게서 여성 장애인은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대부분의 직업 정책들은 사회적 강자인 남성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 기회 보장이 되지 않거나,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평등구조 속에 남아 있게 된다. 97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내용으로 취업 단계에서의 차별 51.61%, 급여·인사차별 43.25%, 직장에서의 차별 31.44% 등이 제기되었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주위의 편견이 54.2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 장애인들은 고용 당시의 차별 이외에 그 후에도 지속적인 불평등과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업 단계에서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4.9%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급여나 인사면에서의 차별 정도는 30% 정도가 동일 직종에 같은 일이라도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70.8%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여성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많은 구조적인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업에서의 차별은 매우 다양하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조사 결과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취업에서의 차별 양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왔다. 97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약 25%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지체 장애인이 37.7%로 가장 취업률이 높았고, 시각 장애인이 22.3%로 가장 낮았다. 시각 장애인 여성의 경우는 80%가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노동직(조립, 생산, 미싱 등)이 가장 많았으며, 육체노동이 많이 필요한 직종은 거의 없었지만 전문직 또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취업률이 낮고 직종도 단순한 데는 여성 장애인이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기회 제한으로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98년 사례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취업 시도에 실패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고자 시장에서 폐휴지를 주워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각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부모와 주변의 권유에 원하지 않는 복슬사로서의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활원,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업의 선택권은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장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취업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는 교육 기회의 부족, 장애, 소극적 사고방식 등 여성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취업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97년 실태 조사를 보면, 고용하는 회사측에서도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와 이들을 위해 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이나 고객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취업과 직업 유지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8년 사례 연구 결과를 보면, 직업을 가진 여성 중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가 시각 장애 여성 한 명에 불과(안마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직장 생활에서의 차별 양상을 보면, 97년 실태 조사의 경우 직업을 가진 이후에는 그다지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98년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임금을 다른 남성 장애인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고, 자판기나 신문가판대 등의 공공 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남성 장애인이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자 위탁운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이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시각 여성 안마사의 경우 다른 퇴폐 영업소들로 인해 자신 직업에 대해 편견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차별들 이외에 비장 애인과 같이 근무하는 직장 생활 내에서 행사나 연수 등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유로는 다른 사람이 꺼려할 것 같은 여성 장애인 스스로의 주저스러움과 실제로 그에게는 아무도 참여를 권하지 않거나 의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주위 동료들의 인식과 편의 시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넷째, 구직 희망의 경우는 97년 실태 조사에 응한 무직 여성 장애인의 78.9%가 직업을 희망하였다. 특히 지체와 시각 장애들의 80% 이상이 직업을 갖기를 원했고, 청각 장애 여성의 경우는 58.7%가 직업을 갖기 원했다. 직업을 원하지 않는 21.1%의 경우에 직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첫째는 자

신의 장애 때문으로, 둘째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셋째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등이 조사되었다. 98년 사례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사례가 구직을 희망하였으나, 교육 부족, 직업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게 되는 경우 등이 제시되었다.

(4) 환경에서의 차별

: 불안정한 환경, 주거, 지역사회와의 관계 부족

안정된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 가운데 하나일 만큼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의 문제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 통합과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들의 경우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정된 주거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보유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택 내부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건축되어 있어 여성 장애인의 경우 가사 노동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생활 가구, 시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여성 장애인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98년 사례 연구 결과에서도 가사노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택 개조의 문제, 지역사회와의 관계 소원화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 대상이 된 사례의 대부분은 지역사회나 이웃과 별다른 관계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인하여 자가 소유의 주택인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이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생계 지원 서비스 뿐 아니라 주택 마련을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 체계와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 조사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전문 시설에의 접근성 부재

: 교통, 환경, 건축물의 장벽

장애인 전문 시설에의 접근성 부재는 편의시설증진법 통과 이후 보완의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교통, 환경, 건축물의 장벽은 여전히 장애인들이 사회와 통합되기 위해 넘어야 할 힘든 벽이 되고 있다. 지하철이나 대중 교통, 공공 기관에의 접근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집을 벗어나 전문 시설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위해서는 이들 접근성 문제들이 개선되어 여성 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98년 사례 연구에서도 학령기 장애 아동의 경우 학교를 가더라도 장애로 인해 학교를 가기 위한 교통 수단은 물론이고 학교 내에서의 편의 시설의 부재로 교실로의 이동,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한 불편

함을 감수해야만 하며,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는 장애인의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자아에서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여성 장애인의 평등 생활과 자립을 위한 저해 요인의 하나로 자아를 언급하는 것은, 그동안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다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 장애인의 자아 형성이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차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차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아를 구성하는 인지나, 신념, 삶의 목표, 자신감, 통제력, 자신의 한계 등이 여성 장애인 삶의 전 과정에 깊숙이 그리고 넓게 관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축이 됨을 고려할 때, 여성 장애인의 자아에서의 차별 구조와 결과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당면한 자아에서의 차별을 인지, 자기 결정권의 부재, 효과 3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한다.

(1) 인지

: 자립에의 의지 부족, 삶의 목표 의식 부족

대부분의 여성 장애인들은 장시간 동안 차별구조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고, 정체성이 부족하며, 자립에의 의지와 삶의 목표 의식이 부재하는 자아 혼동 상태에 놓여 있다. '98 사례 연구 대부분의 여성들은 '난 할 수 없어', '어떻게 해도 상황은 변화될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하였으며, 상당수가 무슨 일을 해보려는 동기 자체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여성 장애인들이 자아 정체감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손상된 이미지를 갖기가 쉽고, 외부와의 상호작용 시에도 심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 장애인의 이러한 현상학적 특성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 장애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분류함으로서 자의식 부족 혹은 자아가 약한 여성 자신의 문제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데에는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현실적 시사점을 주는 이론적인 틀이 있어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 예고되지 않은 외상적인 경험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혼란과 불안, 두려움, 우울 등의 심리적인 혼란과 대인관계나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 등 광범위

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과거에 성공적인 적응 경험이 있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원만한 적응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 때 경험하는 무기력은 일상의 경미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무기력과는 다른 것으로, 자발적인 반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통제 불능의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불린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Seligman(1975)에 의해 처음 발표된 것으로, 무기력 발생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인간이 통제불능성(반응과 결과간의 비유관성, uncontrollability) 상태에 놓여져야 하고, 둘째, 비유관성(noncontingency)에 대한 정보가 인지적 표상으로 전환되어서 이른바 비유관성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 또는 신념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이러한 비유관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이 때 무기력한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무기력 발생 단계에서는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 손상이 수반된다. 이러한 손상을 수반하는 학습된 무기력은 단일 증상이거나 단일 감정이 아니다. 이는 자신감의 결여, 우울 및 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책임성 결여 등의 복합적인 증상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만성화되어 개인의 심리 사회적인 기능을 위협하게 된다.

최근 Abramson은 초기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보완하여 귀속적 틀(attributional framework)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수정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수정된 이론의 특징은 개인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무기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의 차이는 세 가지 귀속 요인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 내적 귀속 요인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 안정적 요인은 무기력의 만성(chronicity), 셋째, 전반적 요인은 무기력의 일반성(generality)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내적 귀속)에는 자신 이외의 환경이나 타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외적 귀속)에 비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대해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화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안정적 귀속)에는 쉽게 변화되거나 나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불안정적 귀속)에 비해서 무기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 사건의 영향이 다른 상황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전반적 귀속)에는 현재 상황 이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경우(특정적 귀속)에 비해 심한 무기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무기력의 강도는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정서적 결손이 심하고, 사건의 결과가 자신에게 중요할수록 무기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살펴볼 때, 장애 발생이라는 생활 사건은 시간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삶의 전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원인을 사회문제라기보다는 여성 장애인 자신의 문제로 돌리려는 경향성을 살펴볼 때, 내적 귀속, 안정적 귀속, 전반적 귀속의

특성을 갖게 되어 심각한 자아의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최근 매맞는 여성이나 강간, 약물중독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여성 장애인의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가장 크게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여성 장애인의 낮은 자아감과 자립 의지 결여, 무기력 등의 전반적인 심리적 무력감은 여성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요인이 동반된 사회문제이며, 또한 학습된 것이므로 재학습 과정을 통하여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이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키고 여성 장애인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들 여성 장애인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임상 사회사업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꾸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자기 결정권 부재

: 성폭력, 매매춘, 가정폭력 등

자기 결정권의 보장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원론적인 성차별주의 근거하지 않고 각각을 동등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인식하는 출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인권 차원에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자발적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부재는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이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이나 매매춘의 대상으로 더욱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성폭력이라함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에 그치지 않고 힘의 관계가 내포한 사회문제로서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이 강간 등의 심한 폭력부터 언어적 성적 회통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임을 고려할 때, 여성 장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97년 실태 조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언어, 신체적, 정신적 폭력 경험에 대한 질문에 50.5%가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의 대상은 주위 사람이 44.7%, 모르는 사람이 34.2%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이 가해진 이후 여성 장애인들의 대처는 그냥 참고 지냈다가 33.3%, 현장에서 즉각 제재했다가 22.8%, 가족들에게 알렸다가 11.4%, 경찰에 신고했다가 7.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인은 상당수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장치도 없을 뿐더러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외부에 대한 도움 요청 없이 그냥 참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시설 수용 여성 장애인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주로 이들을 법적,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성의 결정권은 전혀 고려

되지 않고 묵인되는 아픔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이나 매매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나 가중 처벌 등의 정책적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이들의 취약 계층의 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가정 내 혹은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자기 결정권의 강제적 박탈도 매우 심각하다. 97년 실태 조사 결과의 경우 여성 장애인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절반 정도인 49.5%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 유형 및 결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폭력의 형태는 무시(멸시)가 43.1%, 언어 폭력 42.8%, 구타(폭행) 9.5%, 성폭행 2.5%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성 장애인의 절반 정도가 폭력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특히 자기 방어 능력이 취약한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들의 15.9%가 성적인 수치를 느낄 정도의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8 사례 연구에 따르면, 정신 자체 여성 장애인의 경우 아버지에 의해 다른 형제, 자매와 차별적으로 상습적인 구타를 경험했거나 '학교에 가면 죽인다'고 하며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식당일을 해서 아버지의 술값을 벌도록 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이 결혼해서 경험하게 되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구타의 문제도 심각하다. 자기 방어 능력이 약한 여성 장애인 아내에게 상습적인 구타 폭언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아 여성 장애인 삶을 더욱 무기력하게 하고 의존적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소녀 여성 장애인의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인 또래 학생들의 무시, 따돌림, 놀림 등은 신체적 폭력 이상으로 장애 학생에게 상처가 되었으며,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장애를 매개로 한 욕설이나 놀림은 특히 여성 장애인들의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지원들이 조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가중 처벌함으로서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효과

: 부적절한 장애 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자신감 부족,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적인 삶의 기회 부족

여성 장애인의 낮은 자존감과 자아 인식의 효과는 여성 장애인의 삶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들은 부적절한 장애 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자신감 부족,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적인 삶의 기회 부족에 대하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97년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45.8%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31%였다. 경제적인 불만족에 비하면 주관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낮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들에 의하면 이것이 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여성 장애인들은 정부와 사회에 대해 특별한 여성 장애인 정책을 기대하지 않으며, 단지 그나마 편견과 차별이 덜 한 가정이나 상황에 기대고 스스로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함께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지원이나 정책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없고,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타인에 의한 미미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98년 사례 연구서도 여성 장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였고, 매사에 자신 없어 했으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삶의 기회들을 접하지 못한 채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이 된 12사례 모두 장애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과정이 있었으며, 이것이 부적절하게 작용하였을 경우 이후 삶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삶과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외부적 지원이나 기능적, 행동적 차원의 자립 방안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 장애인의 자아에 관련된 부분 즉 자아존중감, 삶의 동기, 장애 수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차별 받는 모든 집단이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이러한 이중 과제는 차별의 주체와 마주서는 것과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차별과 마주서는 것이다. 두 과제는 언제나 맞물려 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외부의 영향, 인식의 부재, 편견으로부터의 차별을 극복해야 하지만, 여성장애인 자신 스스로에게 규정 내리고 있는 차별에 대해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여성장애인 차별요인 제거를 위한 정책 제언)

오혜경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여성장애인은 이중적 차별구조를 가진 모순적 사회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관습으로 의식화되어 있는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월주의적 사고 및 사회구조가 지배해 옴으로써 남성에 비해 여성은 다분히 무시와 차별 그리고 불이익(disadvantage)을 당해 왔다. 둘째, 장애 그 자체로 인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의 편견, 차별과 죄의식, 그리고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심지어 철저히 '소외'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가 지배하게 된 배경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의 내재로부터 비롯되며, 이들이 모순적, 물이해적, 비복지적, 반복지적 문화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결과를 냉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상에 여성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 특히 차별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복지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및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방향

1)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첫째, 평등생활을 위한 차별요소의 제거 방안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2) 여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에 관한 관심 증대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다른 요보호집단에 비하여 관심과 홍보가 부족한 집단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여성장애인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자녀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노인문제, 빈곤문제 등과도 관련되어 있어,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취업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안정과 결혼, 임신, 출산, 가사노동 등의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가구주로서 혹은 가족내에서의 역할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4)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개선 없이는 여성장애인의 차별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속에서 여성실업률이 급증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하물며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 및 여성을 위한 모자복지정책의 개선은 저소득층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 가정의 자립지원정책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변화를 주도하는 장애인 정책, 여성정책 등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차별화와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자원에 대한 장애인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률 및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주류화(mainstreami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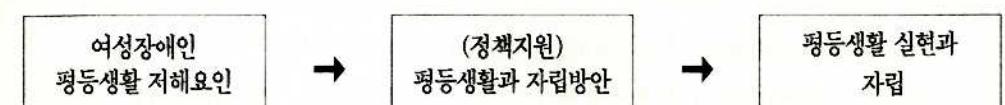
5)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정책들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저소득 빈곤가정의 자립과 관련된 부처들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여성장애인가정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설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성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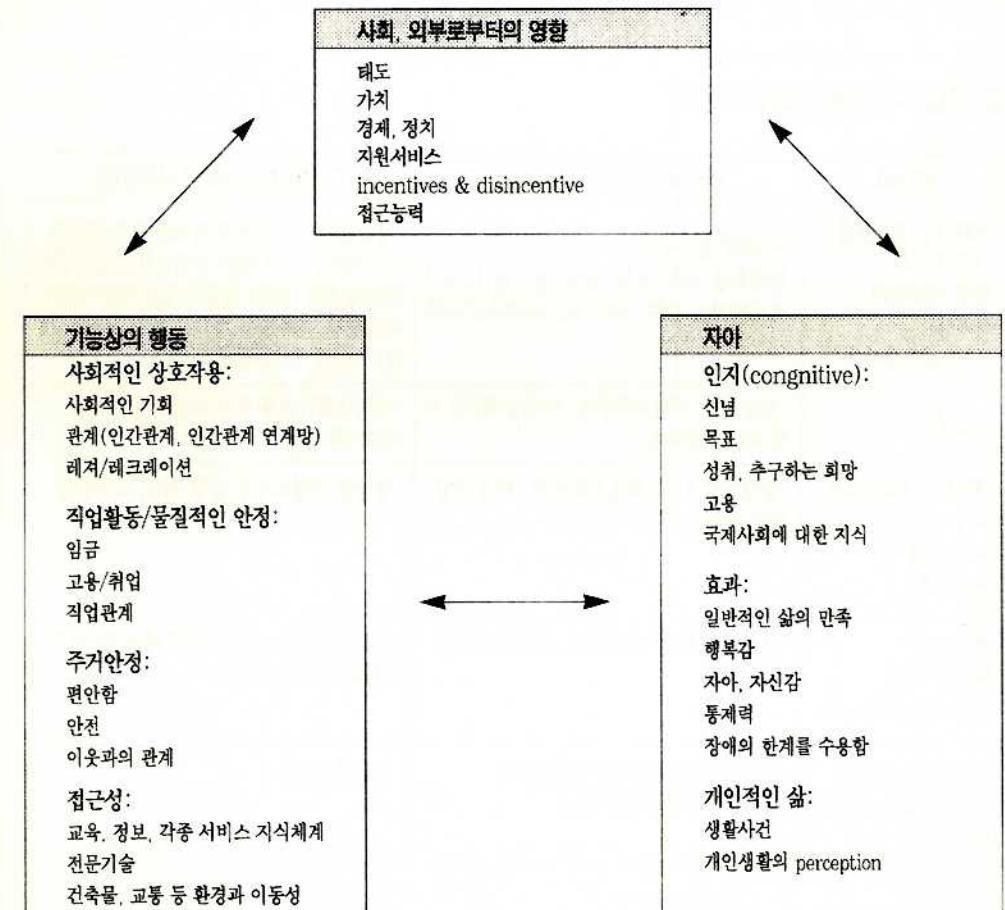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자립이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개입모형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의 분석틀



(참조: A model of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armenter, 1988)

3.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분석틀 및

평등생활과 자립방안

1)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기능상의 행동	걸림돌(평등생활 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태도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기준
경제, 정치	-정책적 배려 부족	정립
지원서비스	-비효율적인 서비스전달체계	-정책적 지원서비스 마련
긍정적/부정적 강화	-접근권마비: 사회, 각종정보, 통신, 정책, 교육, 고용	-효율적 서비스 전달 -접근권 보장
접근능력		

2) 기능과 행동으로부터 영향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 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사회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기회 관계(인간관계, 관계망) 레저, 레크레이션	-사회적 상호작용 불평등한 교육, 고용, 양육기회, 공식, 비공 식지원체계 부족, 여가, 레크리에이션 부족	-가족내에서 평등한 양육기회제공/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평등 한 고용기회 제공/ 평등한 결혼기회 제공/ 여가생활,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 발/ (비)공식지원체계 확립
건강보건	-건강보건, 예방교육부족, 여성장애인을 위 한 의료기관부족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관리체계확립/ 의료기관 확충
직업활동/물질적 안정 임금 고용/취업 직업관계	-불평등한 임금, 취업기회부족, 기타 직업 활동 저해 요인	-평등한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 소득안정
주거안정 편안함, 안전 이웃과의 관계	-불안정한 환경, 주거문제, 지역사회와의 관계부족	-안정된 환경조성 및 주거문제 해결/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강화
접근성: 물리, 환경 건축물, 교통 등 환경 과 이동성	-장애인 전문시설에의 접근성부재 교통, 환경, 건축물의 장벽	-접근성 강화

3) 자아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 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인지:	신념, 목표, 성취, 추구하는 회 당, 고용,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자립에의 의지 부족 삶의 목표의식 부족
자기결정권		성의 자기결정권 부재 성폭력 매매춘
효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감 자아, 자신감 통제력 장애의 한계를 수용	부적절한 장애 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자신감 부족 프로그램 마련
개인적인 삶 생활사건 개인생활의 Perception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적인 삶의 기회 부족 부족한 개인 삶의 확보

4.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1) 개요

(1)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평등생활과 자립생활 방안)	정책과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에 따른 각종 지원을 차별화하는 제도 마련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고등·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내용 포함(교과목 개편작업), 초·중·고등생의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초·중·고등생 대상의 장애인 체험대회 의무화(연간 1회이상), 정책입안, 정책결정자(국정책임자 이하)들의 장애체험 의무화, 공기업, 민간기업 등 승급시 장애인 체험,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 제도 마련,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 차별화, 방송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확산, 정무(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방송관련 부처)는 장애인인식개선 확대운동 노력여부에 따라 지원 차등화. -장애인과 여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장애인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 수립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기구 및 시민단체의 활동 활성화
여성성, 미, 성에 대한 개념 및 올바른 가치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계, 장애인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의식, 미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 -여성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여성장애인 잡지 발간, 여성장애인 모델 발굴, 여성성, 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도우미로 활용 등
정책적 지원서비스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 :여성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본인 혹은 자녀학자금 을자 -직업훈련 및 취업일선체계 개선: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확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제공,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 빨굴, 단기교육 활성화,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 발굴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각종 도우미 제도 확대: 도우미에 대한 수당제도 확립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스택커지 제도 확립 : 직업훈련, 구직 일선, 보육서비스, 의료보호, 주거보장, 교통비 제공과 같은 이동 수당 제도 등의 종합적인 접근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 강화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 강화 :생계비 증액,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결연사업 확대,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장애인 가정의 홍보, 다양한 후원, 결연 프로그램 개발, 문화결연사업
접근권 보장 :정보, 통신, 교육, 고용, 각종 사회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을 위한 통신교육, 통신기기 보급, 통신비용 감면 -TV 자막 방송의 확대 -일간지의 음성신문의 제작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에 음성서비스 실시 -여성장애인 사이트 마련 각종 정보제공

(2) 행동기능으로부터 영향

행동기능으로부터의 영향 (평등생활과 자립생활 방안)	정책과제
가족 내에서의 평등한 양육, 교육, 결혼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내에서의 평등한 삶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지역사회 보호제도 마련, 지역사회 보호기금제도 마련, 여성장애인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양육과 처우를 위한 장애기록 지원프로그램 강화, 장애자녀 양육수당 강화, 양육비의 현실화, 여성장애인자녀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등
임신, 출산,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산전산후 관리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양육 도우미 서비스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확대 -자녀 학비 지원 -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여성장애인 자녀에 대한 보육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여성장애인 자녀의 병파후 프로그램 확대실시 및 질적 향상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료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기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확대 -일정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여성장애인 환자 관리 담당 부서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함 -필요한 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 -의료보호 확대 -전강검진 제공 -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삼병수당제도 도입, 산업재해 적용범위 확대 -지원집단 구성활동을 통하여 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평등한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일선 사업을 강화 -현재 장애인 고용율에 여성장애인 할당제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확대 방안 마련 -여성장애인 우선고용 혹은 여성장애인 적합직종/업종을 선정하여 여성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취업 여성장애인 근로소득세 외 각종 소득세에 대한 세금감면 폭 확대 -취업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고용수당제 마련 -여성장애인 고용 노력업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각종 세금감면, 지원금 등 차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여성장애인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할당제 도입 :고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 여성장애인에게 할당, 여성장애인지도자를 일정비율을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정부기관에 장애인 문제 연구분과 설치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교육을 이기는 장애부모에 대한 법적제재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경화 도입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 강화: 아동연령에 따른 다양한 지원서비스 마련
안정된 환경조성과 주거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의 주거환경의 개선/기존의 주택에 대한 개조보수 서비스 확대 -영구임대아파트 혹은 공공임대 주거시설에 입주 우선순위, 입주기간의 장기화 -주택구입을 원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지원/주택유지자금 지원 -전세금융자금 지원 -여성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 조사 강화 -시설보호인 경우: 소공동체생활 확대, 시설운영 개방화, 시설종사자의 요건 강화하여 전문성 강화
접근권 확보 (교통, 건축물, 도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 확보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철저히, 벌금 강화

(3) 자아

자아의 영향 (평등생활과 자립생활 방안)	정책과제
인지 : 정신적인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교육기회의 확대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각종 정보 제공,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제공, 자기의식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심리 등과 관련한 상담프로그램 확대 - 여성장애인 자조-자립집단 활동의 확대, 강화 - 비공식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적인 자립 지원 - 여성장애인 지도자의 빨굴육성 및 역량 강화 - 비장애인의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지기결정권 확보 : 법/ 제도 및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관련 특별법 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법 행위시 가중처벌로 법적 대응/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매매춘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각종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관에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실시 - 장애수용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자신의 삶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인권, 재활운동으로서 자립생활운동의 활성화

2) 구체적인 정책과제

(1)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이란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하여 실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가치, 인식 등이 변화되어야 하며, 사회, 경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법률의 정비, 제정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normalized)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측면(교육, 고용, 사회활동, 각종 정보, 통신, 정치활동 등)에서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a.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인식개선 노력에 따른 각종 지원을 차별화하는 제도 마련
- 정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방송관련 부처)는 장애인 인식개선 확대운동 노력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 유아, 초등, 중, 고등 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내용 포함(교과목개편작업)
- 초, 중, 고등생의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 초, 중, 고등생 대상의 장애인 체험대회 의무화(연간 1회이상)
- 정책입안, 정책결정자(국정책임자이하)들의 장애체험 의무화
- 공기업, 민간기업 등 승급시 장애인 체험,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 제도 마련
- 통합교육확대: 교육부는 통합교육 실적에 따라 각 학교에 지원을 차별화
- 방송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확산

b.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된다

- 미국의 경우 1964년 시민권(Civil Rights Act)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당시 이 법 제정의 가장 주된 필요성은 여성과 소수민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은 “여성 및 소수민족 차별금지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과 여성이 차별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은 지금까지도 막강하다. 당시 이 법속에 삽입되어 있는 조항이 “장애”라는 한 카테고리이다. 장애인도 하나의 소수민족처럼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법을 기초로 1973년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도 차별금지를 명문화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법의 역할과 기능이 커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분쟁이나 갈등 그리고 차별은 없다. 하지만 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대조직으로 비장애인과 소수 그룹인 장애인이 있다. 그리고 여성은 여전히 남성으로부터 종속적 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여성장애인의 차별금지조항과 차별시 법적 청구권과 대응에의 보장은 당연한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c. 이와 아울러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법안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가할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률적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

부서조차도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시,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사항들을 장애관련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의식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 여성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장애인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운동이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력화시킬 수 있는 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여성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실제적인 서비스 외에도 의료적,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일반여성단체와의 연계 활성화, 모든 수준의 자조운동 강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f. 여성성, 미, 성에 대한 개념 및 올바른 가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계, 장애인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의식, 미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여성장애인 잡지발간, 여성장애인 모델발굴: 여성미, 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도우미로 활용

g. 여성장애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

- 여성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와 자녀교육, 부모역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지원망, 자녀 돌보기에 유용한 기구개발 등의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관심, 경험, 의견 등을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해서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을 위한 부모역할 지침서, 임신과 출산, 부모역할에 적합한 도구, 아이디어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논문, 워크숍, 소식지, 정보지 발간 사업 등의 꾸준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 학문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 장애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제시토록 하며, 여성차별, 장애차별의 구조와 이러한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복지), 재활, 여성,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행하여질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여성장애인의 당하는 차별에 대하여 사회사업실천의 측면에서 앞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사업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h. 정책적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축 등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각종 도우미 제도 확대
- 각종 도우미 제도 확대/ 가사활동, 양육에 필요한 도움 제공
-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업자금융자제도 확대
 - : 응자기준 완화/- 응자액 증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 : 여성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자영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현행 생업자금 응자제도는 여성장애인의 창업을 통합 자립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업자금융자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응자기준을 완화하고, 응자액을 증대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경우 창업에 관한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영업이 가능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쉽게 창업에 도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 본인 혹은 자녀학자금 응자
 - :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우리나라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 또한 재취업의 기회 또한 가장 낮은 집단이다.
 - :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우, 한시적 생활보호,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장애인자녀보육료 감면 혜택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망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i.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이나 생업자금융자 등을 통하여 여성장애인 가정의 여성장애인들의 인적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 받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생계문제, 이동문제, 가정생활문제, 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자녀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을 현실성 있게 보장하여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를 보장해 주어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훈련받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여성직종에 취업함으로써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확립해야 한다.

- 훈련을 위한 주변환경,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효율적인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 모든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여성장애인들 가운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교육배경, 직업적 성 등을 고려하여 직종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격증 훈련과 단순기능 훈련 가능자를 구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장애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등 가족 구성원도 훈련대상에 확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직업훈련 직종 개발:

기존의 직업훈련내용에서 탈피하여 취업가능하고 전망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 자격증이 없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함으로써 보다 기술적,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전화교환원, 전화조사원, 홈쇼핑 등 각종 전화상담원 등).

- 여성장애인 적합직종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의 직종에도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춘 여성인 경우, 서류관리, 문서작성, 인터넷관련 직종, 경리, 세무회계 업무 등의 직업훈련도 권장되고 있다.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직종에 도전할 수 있는 굳건한 자아 형성과 자립심, 자존심과 의지력의 개발을 위한 직업의식 교육과 정보제공 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한다.

-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제공

j.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이 발굴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기관에 훈련생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여성장애인의 경우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 단기교육 활성화

- 직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훈련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훈련소요기간은 동일한데 기간이 긴 것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직종에 따라 집중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집중적으로 단기 훈련을 함으로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

- 기혼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일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훈련직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k.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 이후에 취업과 곧 연결되는 일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무에 취업하고, 신원보증문제, 안정된 취업처가 없어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정도이다.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력, 훈련직종, 적합직종 등과 연관된 직종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을 획득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증을 획득할 때까지 재교육을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직업훈련과 동시에 같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즉 직업훈련생을 배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대로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또한 이직, 전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의 일반적, 직업적, 훈련 및 고용을 포함하여 품위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등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은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로 개발하고 가능한 자립적이며 또한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데 특별한 곤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부와民間단체 모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지도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응훈련, 직업훈련 그리고,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아동양육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안심하고 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m.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체 체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구직알선, 보육서비스, 의료보호, 주거보장, 교통비제공과 같은 이동수당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n.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o.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생계비 증액
-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p.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가정은 대부분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적 지원망이 취약한 집단으로 밝혀졌으며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집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 결연사업 확대
- 여성장애인과의 비공식적 지원망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심리적 지원의 기능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자원의 개발을 위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금전적 후원과 심리적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전 결연 이외에도 문화공연기관 등과 연계하여 문화결연을 시도할 수 있다.
- 결연의 종류에는 문화결연을 통한 문화체험, 스포츠결연을 통한 스포츠 체험 후원자 결연, 가족단위 후원자, 단체-집단결연
- 여성장애인과의 결연사업 확대를 위해 매스컴 활용할 수 있다.
- 비공식 지원망과의 관계개선 및 교류활성화
-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활동의 기회가 부족하여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한 상실감, 상대적 소외감 등을 느끼게 되고,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집단활동, 동료집단활동, 사회단체회원들과의 교류, 캠프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상호지지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장애 가정에 대한 홍보강화
- 다양한 후원, 결연 프로그램 개발

q.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 통신, 교육, 고용, 각종 사회생활

- 여성장애인을 위한 통신교육, 통신기기 보급, 통신비용 감면
- TV 자막 방송의 확대
- 일간지의 음성신문의 제작

-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에 녹음서비스 실시

- 인터넷상에 여성장애인 사이트 마련 각종 정보제공

(2) 행동기능으로부터 영향

행동기능으로부터의 영향이란 장애로 인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기능상 장애를 겪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과 행동/활동상의 장애는 여성장애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에 영향을 미쳐 평등한 삶을 저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장애, 직업활동의 장애로 인한 물질적인 불안정, 행동의 불편으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이동장애로 인한 접근상의 장애를 겪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 a. 가족 내에서의 평등 양육,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족내에서 양육되어지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차별내용 가운데, 폭행, 교육적 차별, 결혼에 있어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에 자본이 될 수 있는 자녀우선사상이 뿐리깊게 이어져 왔다.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우, 수혜자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이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공급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자녀 특히 여성장애인의 양육을 가족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는 앞으로서 지속될 것이다.

- b.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보호 제도 마련
- 지역사회보호 기금제도 신설
- 여성장애인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양육과 치우를 위한 장애가족지원프로그램 강화
- 장애자녀 양육수당 강화, 양육비의 현실화
- 여성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 c.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 임신, 출산에 대한 전강판리 및 산전, 산후 관리 지원
-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양육 도우미서비스
-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확대
- 자녀 학비 지원
- 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 여성장애인 자녀에 대한 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용
- 여성장애인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실시 및 질적 향상
- 상담 및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d. 의료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확대

- 일정 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 여성장애인 환자 관리 담당 부서를 의무적으로 운영

- 필요한 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

- 의료보장체계 강화: 의료보험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의 경우, 건강문제를 안고 있고 힘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기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 질환이 있는 가정에 대한 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이나 자신이나 가족가운데 특히 자녀가 질병이 있는 여성장애인 가정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의료보호의 확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급여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 보호(자립)작업장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질병이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해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저소득 여성장애인 가정을 위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복합적이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일반의료 및 정신건강센터가 종합 병원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신상담, 가족계획, 부모역할, 건강, 심리상담, 자조 - 지원집단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팀으로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서비스

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e. 평등한 취업보장 및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업 강화

- 현재 장애인 고용율에 여성장애인 할당제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확대방안 마련
- 여성장애인 우선고용 혹은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업종을 선정하여 여성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 여성장애인 근로소득세 외 각종 소득세에 대해 세금감면 폭 확대

- 취업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고용수당제 마련

- 여성장애인 고용 노력 업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각종 세금감면, 지원금 등 차별적인 지원제도 마련

f. 여성장애인의 공공기관 등에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할당고용제 등과 함께 여성장애인의 우리사회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고용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여성장애인에게 배려하도록 해야겠으며,

- 정부의 주요 요직이나 의회 등에도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장애인지도자를 일정비율 진출하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의 역할과 기능 등을 재조명하고 보다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하도록 분과설치 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g.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 의무교육을 아기는 장애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

-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념화 도입

h.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는 여성장애인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족, 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의 부족 또는 자녀와의 관계문제 등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 무료입소 외에도 방과후 아동지도, 여름-겨울캠프, 문화결연, 학비지원, 학습지도 및 탁아/보육, 과외학습, 특별활동지도, 학용품 지원, 도시락지원서비스, 상담을 통한 자녀와 엄마의 의사소통시간 마련, 서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양육관련 상담, 등 여성장애인 어머니로서 수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서비스와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가, 동료집단, 자조집단, 이웃의 개입이 요구된다.

- 6세미만의 아동의 경우:

: 보육과 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비지원 확대하고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융통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양육비지원 현실화

: 아동수당, 육아수당

: 지역사회내 공동육아프로그램

: 편모 가정에 대한 정서적 물질적 지원 등

- 초등학생자녀의 경우:

: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 생활용품비, 간식비, 운동화비, 수학여행비, 하계-동계캠프활동비, 부식비, 우유값, 급식비 등 특별 지원

: 특별/ 취미활동비 면제

: 사설학원 비용 감면(면제), 학교급식비나 특별활동비, 사설학원 이용 등은 개별적으로 학교장이나 학원장의 양해를 구하도록 방법으로 면제받은 만큼 자원봉사활동이나 근로장학생 형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임.

: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에 여성장애인 아동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가족 단위의 결연사업

- 중고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인 경우 모의 장애로 인해 가사일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느껴, 학업과 가사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인문고등학교 학비지원

: 사설학원비 지원

: 정보통신부 컴퓨터, 통신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보통신교육 우선 실시

: 직업훈련비 지원

: 직업훈련프로그램 이용에 우선 순위부여

: 집단교육, 성교육, 캠프 등을 통한 자조집단 형성

: 진학지도, 학습지도 등 각종정보 제공

: 문화관광부 청소년지도 육성프로그램과 연계,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상담실 활용

: 장애모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관계 개선 프로그램

: 대학진학시 장애부모 자녀에 대한 특차전형 실시.

-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 대학입학금 지원(대학의 장학제도, 도비, 국비, 시군구비로 지원 가능성 마련)

: 청소년 육성금 중 학비 지원

: 학비지원 자매결연, 후원자 개발

: 세태 변화 인식,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머니 대상 프로그램 개발

i. 안정된 환경조성과 주거문제 해결

주거문제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가운데 한가지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주거문제는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안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첫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가보호의 경우,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편의시설이 확보된 주거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 시설보호인 경우

: 시설의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거보장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가장애인의 생활이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설보호의 기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재가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인 경우, 소공동체생활(Group-Home)의 확대가 요구된다.

: 시설운영을 개방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도록 한다.

: 시설종사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인다.

- 재가장애인인 경우

: 공영주택이나 임대 우선분양,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 특별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편리한 주택 개조,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 영구임대아파트 혹은 공공임대주거시설에 입주 우선순위

: 입주기간의 장기화

: 주택구입을 원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지원, / 주택유지자금지원

: 전세금융자지원

j. 시설보호나 재가 장애인에 구별없이 모든 여성장애인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내의 자원을 활용한 주택관리에 필요한 도움을 지원 받는다.

- 여성장애인의 주거환경의 개선/ 기존의 주택에 대한 개조보수 서비스 확대

k. 여성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 조사 강화

- 부엌가구, 주방시설 개발, 옷장, 침대, 목욕실, 다용도실 등 편의시설과 환경개발

1. 접근권 확보 (교통, 건축물, 도로, 환경)

- 편의시설 확보
-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철저히, 벌금 강화

(3) 자아

a. 정신적인 자립 지원

-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교육기회의 확대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각종 정보 제공,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제공, 자기의식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심리 등과 관련한 상담프로그램 확대
- 여성장애인 자조-자립집단 활동의 확대, 강화
- (비)공식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적인 자립 지원

b. 여성장애인 지도자의 발굴 육성 및 역량 강화

여성장애인 지도자는 인권과 권리 그리고 사회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지도자의 발굴 육성과 아울러 역량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결정권과 의존권을 가지되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인식을 여성장애인 지도자부터 가져야 하며 전문지식을 겸비 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지도자의 연수나 훈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여성장애인 지도자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사회를 보는 예견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첨단 정보화사회의 본격화, 지구촌시대의 심화, 시민사회의 대두, 노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앞으로 복지 욕구도 더욱 증대된다는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한 지역장애인 복지수요와 공급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통합은 때로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 사람의 말보다는 다수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것의 파괴력과 해결방법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체계를 잘 육성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지도력에는 판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조직체계의 역동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집단적, 조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권익 집단으로 세력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비장애인의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식개혁이 요망된다.

: 전통적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정적 의식의 개혁 없이 비장애인의 태도와 개선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식개혁의 방안으로는 첫째, 정치지도자 집단을 1차적 대상으로 하여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둘째,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 등에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나 사회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장애인프로그램을 흥미나 동정위주에서 재활과 삶의질 향상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를 강화해야겠으며, 넷째, 분리교육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통합 교육(mainstreaming)과 포함교육(inclusion)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어릴 적부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c. 자기결정권 확보

- 법/제도 강화
 - 치별강화
 - 여성장애인 관련 특별법 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법행위 가중처벌로 법적대응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매매춘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d.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복지기관에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실시
- 장애인용 프로그램
-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e. 자신의 삶 찾기

- 여성장애인의 인권, 재활운동으로서 자립생활운동이 자리 매김 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이나 실체적 권리의 보장 없이 장애인의 완전히 통합과 참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의 완성 없이도 장애인의 권리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자립생활운동(IL: Independent Living)에는 크게 세 가지 철학적, 이론적 준거가 있다.

- 첫째, 소비자로서의 주권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생산적 사람에 대칭되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인정되는 소비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재활이나 복지프로그램까지도 선택하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명실공히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게끔하는 소비자개념(consumerism)을 말한다. 만약 우리 사회의 재활이나 사회복지의 욕구가 있고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장애인 스스로 선택해서 시설입소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면 재활이나 복지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개발될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하겠

다.

- 둘째, 장애인 스스로의 의존권(self-reliance)의 확보이다. 비록 중증장애인도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찾도록 자기자신의 자원을 부단히 개발하는 재활사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 셋째, 정치적, 사회적 권리(potitical & economic rights)의 쟁취이다. 장애인도 그 지역사회나 국가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아갈 때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리 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 아울러 이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에 포함되는 것이 탈시설화와 탈병원화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을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사회복지 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킬 때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4) 기타 자립생활을 위한 방안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장애인복지상담원, 여성복지상담원들의 업무의 조정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 생활보호가정, 장애인가정, 모-부자가정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자체의 세분화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이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여성장애인 가정인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경제적인 지원내용과 지원액이 현실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는 다양하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욕구중심(외부로부터의 영향, 행동기능, 자아문제 등)으로 각 관련부처들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닌 서비스에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의 구조조정과 협력이 요구된다.

조사기관 : 시민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전화 : 02)521-5364

전송 : 02)584-7701

통신 : 천, 나) COWALK

홈페이지 : <http://www.cowalk.or.kr>

A4-86

등	A4	86
---	----	----

제1회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보고대회 자료집



일시 : 1997. 8. 25(월) 14:0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참가단

제1회

국제장애인여성리더십포럼

보고대회 자료집



일시 : 1997. 8. 25(월) 14:0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국제장애인여성리더십포럼참가단

- 인사말
- 격려사
- PART I 보고서
 - 큰 외침, 자긍심 그리고 열정 : 김미연
(세계 장애여성 지도자 연수 보고서)
 - 세계 장애여성의 현실과 희망 : 박영희
(제1회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 보고서)
 -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포럼 주요이슈 : 이은경
 - 한국맹인여성회의 역사와 활동내역 : 이낙영
- PART II 참관기
 - 윤석인, 김선옥, 윤미경, 정영란, 정형란
- 부록
 - 성명서 번역
 - 대회사 번역
 - 환영사 번역
 - 장애여성의 비전과 외침 (비디오 내용 번역)
 - 자료목록과 관련단체 주소록